

『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고아 및 봉곡지구 소방파출소 부지매입 : 고아읍 및 봉곡동의 인구 증가와 지역주민의 소방행정 욕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아읍과 봉곡동에 소방파출소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
-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여가활용 기회를 받지 못하는 농촌 지역 노인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구 구 봉초등학교 앞 경상북도(교육청) 소유의 부지를 매입.
- 롯데마트 구미입점에 따라 시민에게 체육시설제공을 위하여 롯데쇼핑(주) 롯데마트에서 인라인롤러 스케이트 경기장 설치 후 시설물 기부채납
- 삼성 홈플러스 구미광평점 입점에 따라 시민에게 볼거리제공을 위하여 삼성테스코(주)에서 풍차설치 후 시설물 기부채납

3. 주요내용

【 취득재산 : 매입 】 - 5건

☐ 고아지구 소방파출소 부지매입

< 당 초 >

- 토 지 : 1필지 1,245m²(항곡리 380-2, 답)
- 예정가격 : 249,000천원(공시지가 기준)

< 변 경 >

- 토 지 : 3필지 1,653m²정도
(임야 1,173m², 전 397m², 하천 83m²)
- 예정가격 : 310,000천원(실매입 예정가 기준)

☐ 봉곡지구 소방파출소 부지매입

< 당 초 >

- 토 지 : 1필지 1,066m²(봉곡동 173-1, 대지)
- 예정가격 : 548,000천원(공시지가 기준)

< 변 경 >

- 토 지 : 1필지 1,396.4m²(봉곡동 174-5, 대지)
- 예정가격 : 808,516천원(공시지가 기준)

☐ 옥성면 구봉리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

- 토 지 : 1필지 3,626m²(옥성면 구봉리 369-4, 전)
- 예정가격 : 97,902천원(실매입 예정가 기준)

【 취득재산 : 기부채납 】 - 2건

☐ 동락공원 시설물(풍차, 인라인스케이트장) 기부채납

- 위 치 : 구미시 진평동 766

○ 시 설 물

- 인라인롤러-스케이트경기장 (국제규격의 벨로드롬 200m 트랙)
- 풍차 (높이 17m, 날개길이 19m, 내부직경 8m)

○ 취득가액

- 인라인스케이트장 : 1,000,000천원(공사비 924,000 설계 용역비 76,000)
- 풍차 : 700,000천원

4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5조
-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
-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변경안은

-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써 매입 5건, 기부채납 2건등 7건입니다.

○ 먼저 매입으로 인한 취득재산 5건입니다.

- 1) 고아지구 및 봉곡지구 소방파출소 부지매입 건은 인구증가와 재난 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코자 소방 파출소 설치를 위한 것으로써 고아지구는 토지 3필지 1,653 m², 봉곡지구는 토지 1필지 1,396.4m²를 매입하는 것임
- 2) 옥성면 구봉리 게이트볼 장 부지매입 건은 노인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게이트볼장 등 체육 시설 부지로 활용하기위해 구(舊) 구봉초등학교 앞 토지 1필지 3,626m²를 매입하는 것임

○ 다음은 기부채납으로 인한 취득재산 2건입니다.

- 롯데마트와 삼성홈플러스 구미입점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체육시설인 「인라인롤러 스케이트장」과 이국적인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「풍차」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것임
- 시설 위치는 동락공원 내이며 시설규모는 롯데쇼핑(주) 롯데마트에서 기부채납 예정인 「인라인롤러 스케이트장」은 국제규격의 벨로드롬 200m 트랙이며, 삼성테스코(주)에서 기부채납 예정인 「풍차」는 높이 17m, 날개길이 19m, 내부직경 8m인 대형 풍차입니다

○ 구체적인 취득재산의 지목 및 소재지, 취득시기, 추정가액과 위치도면 등은 변경안 4쪽부터 1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변경안 검토결과 재검토 사항은 고아지구 및 봉곡지구 소방파출소 부지 매입 건입니다.

- 본 부지 매입 건은 지난 2005. 12. 27 제109회 정례회시 소방파출소 부지 매입을 위하여 2필지 2,311㎡(항곡리 380-2번지 1,245㎡, 봉곡동 173-1번지 1,066㎡)를 취득하는 것으로 기 동의하였으나
-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주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부지 4필지 3,049.4㎡(변경안 4쪽 참고)를 변경 매입하는 것은 재산취득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.

○ 재산 취득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타당한지의 여부와 예산은 확보되었는지, 재산취득의 지연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없는지 등 적정여부를 종합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.